

#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및 거래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업무지침

제정 2011. 7. 1.

개정 2013.10.24.

개정 2015. 8.10.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이라 한다), 금융위원회의 「금융투자업규정」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'협회'라 한다)의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운용·매매체결업무와 관련한 중개회사 등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및 거래 중개회사 선정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정의)

- ① "중개회사"란 자본시장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투자매매업자·투자증개업자를 말한다.
- ② "조사분석서비스"란 중개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업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③ "조사분석업무 등"이란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공하는 자료 등이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62조에 따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분석업무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.
  1.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것
  2. 독자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이전에 발표된 것을 반복한 것이 아닐 것
  3. 지적인 염밀성을 갖고 있고 일반적이고 자명한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 것
  4.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·계산을 포함하는 것일 것
  5. 조사분석업무 등에서 제공하는 증권 등에 관한 정보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등의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연관성 및 유용성이 있을 것
  6.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유포된 발간물이 아닐 것
-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법, 같은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3조(적용범위)

- ① 이 지침은 중개회사 선정 및 평가,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비용처리 등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사와 중개회사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② 이 지침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1.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운용위탁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조사분석서비스를 직접

제공받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

## 2. 사모집합투자기구

### 제4조(조사분석서비스의 구분)

- ①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로부터 조사분석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그 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.
  - 1. 집합투자기구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거나 일상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조사분석서비스로서 집합투자업자를 위해 제공되는 조사분석서비스(이하 ‘집합투자업자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’라 한다)
  - 2.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자산배분 및 투자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조사분석서비스로서 집합투자기구를 위해 제공되는(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양자 모두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) 조사분석서비스(이하 ‘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’라 한다)
- ② 조사분석업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로 보지 아니한다.
  - 1. 집합투자업자의 홍보 및 마케팅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보
  - 2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성과 측정에 관한 서비스
  - 3. 재무, 회계 및 부기 등 실무 업무집행용의 컴퓨터 소프트웨어
  - 4. 전문가 단체의 회비
  - 5. 사무용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
  - 6.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표되어 있는 정보
  - 7. 국외 정치·경제 자료 등의 번역 서비스
  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8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집합투자업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

### 제5조(기본원칙)

- ①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집합투자업자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(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)

-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1.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(중개수수료)이나 수익
  - 2. 거래 유형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
  - 3. 중개회사의 재무상황,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
- ② 중개회사의 선정은 세미나 개최, 기업탐방 주선 및 조사분석 서비스 등 리서치 기여도와 매매 및 결제관련 집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
- ③ 회사는 중개회사에서 제공한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의 가치와 적정성을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별로 평가하여야 한다.

- ④ 중개회사의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각 운용본부 또는 팀 별로 시행하며, 세부 항목은 별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제7조(조사분석서비스평가 및 거래 중개회사 선정 위원회 등)

-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중개회사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‘조사분석서비스평가 및 거래 중개회사 선정 위원회’(이하 ‘평가위원회’라고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1.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직원
  2.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체결업무 담당 임직원
  3.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결제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직원

#### 제8조(중개회사 선정 및 결과보고)

- ① 조사분석서비스 평가 및 거래중개회사 선정은 매분기별로 선정절차에 따라 다음 분기 시작 전까지 실시한다.
- ② 위 선정결과는 다음 분기 시작 전까지 운용담당임원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(약정배분 결과보고) 해당 분기의 약정 배분 결과를 운용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운용팀과 캠플라이언스팀에게 해당분기 익월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0조 (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의 지급)

- ①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의 지급은 제6조의 중개회사 선정 결과에 따라 운용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정하게 집행한다.
-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1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집합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조사분석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12조(내부통제)

- ① 준법감시담당자는 중개회사 평가 및 선정 결과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중개회사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준법감시담당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사용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절차가 제8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제13조(수수료의 기재의무)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6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자료의 기록·유지)**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,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하고 10년간 유지하여야 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 결과
2. 중개회사별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지급 내역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유예) 이 지침 6조 4항 및 별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조사분석서비스 평가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 1호 : 주식운용본부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

## 주식운용본부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

제정 2013.10.24

개정 2015. 8.10

### 1. 중개회사의 선정

(1) 중개회사의 구분 : 조사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중개회사 (이하 “일반중개사”)와 그렇지 않은 중개회사 (이하 “저가중개사”)를 구분하여 선정한다.

	일반중개사	저가중개사
수수료 배분 비율	당 운용본부가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수료의 90% 이상	당 운용본부가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수료의 10% 이하
중개사의 수	30개 이내	5개 이내
수수료율	중개사와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	10bp 미만

### 2. 중개회사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

#### (1) 평가항목

구 분	내 용
1. 조사분석서비스	
(1) 정성평가	
① 투자아이디어 ② 조사분석서비스 ③ 기타지원	투자 아이디어의 질 조사분석서비스의 질 세미나, 탐방 등
(2) 정량평가	
① 베스트애널리스트 ② 세미나, 탐방, NDR 횟수	당사 선정 실시 횟수
2. 매매	주문집행의 정확성 및 속도
3. 체결 및 결제업무	

- 항목별 비중은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
(2) 평가자 개인별 비중: 평가자의 직책, 운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을 둘 수 있으며,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
### (3) 수수료 배분기준

- ① 각 중개회사별 평가 순위에 따라 수수료가 배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A그룹 (10개사 이내), B그룹 (20개사 이내), 저가중개사 (5개사 이내)로 구분하며, A그룹에 45% 이상, B그룹에 45% 이하를 배분하며, 저가중개사의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10% 이하로 배분할 수 있다.
- ③ 각 중개회사에 배부되는 수수료는 매매체결수수료와 조사분석수수료로 구분하며, 매매체결수수료는 저가중개사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고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조사분석서비스수수료로 본다.

### 3. 적용 예외

- (1) 일임 계약의 수익자가 거래 중개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경우
- (2) 매매 상대방이 제한되어 원활한 거래가 어려운 경우 (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주간사가 정해진 블록딜)에는 예외를 적용하되, 매매거래 전 운용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(3) 거래 중개회사로 선정된 이후라도 매매 사고 및 중개회사의 신용도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 채권운용본부 중개회사 선정 및 평가기준

제정 2013.10.24

개정 2013.12.31

개정 2015. 8.10

### 1. 거래증권사 및 선물사 평가기준

#### (1) 거래증권사 선정기준

	구분	항목별 점수	최종점수
채점방식	1단계 3사	8 점	담당자 개별 채점 ⇒ 담당영역별 가중평균 ⇒ 최종점수 합산
	2단계 4사	6 점	
	3단계 5사	4 점	
	4단계 6사	2 점	
	기타 사	1 점	

담당자	항목	평가요소
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(90%)	자료제공 능력 및 분석방법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권시장 및 업종별, 종목별 분석자료 제공</li> <li>- 구조채권, 신규 도입 채권 및 제도 등 분석자료 제공</li> <li>- 기업탐방, IR 등의 기회 제공</li> <li>- 의사결정방식(Top-down/Bottom-up approach) 사용여부</li> <li>- 수학적, 통계적 혹은 다른 분석 기법 사용 및 활용 정도</li> </ul>
	공급정보 제공능력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권간 스프레드 변화 및 종목간 가격괴리 발생시 정보제공 능력</li> <li>- 차익거래 발생시 기회 제공 가능</li> <li>- 실시간 수급동향 제공 가능 능력</li> </ul>
	기타 (2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자료 및 서비스 제공</li> <li>- 문의시 대응능력</li> </ul>
	세미나 (1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Macro 경제환경 및 채권시장 분석 및 전망</li> <li>- Credit 관련 기업, 시장 분석 및 전망</li> </ul>
채권 트레이 더 (5%)	거래체결능력(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권호가의 정확성, 신속성, 적정성</li> </ul>
신탁회계팀 (5%)	신탁결제 업무능력 (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제 업무 상의 정확성 및 신속성</li> <li>-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</li> <li>- 결제 전반에 필요한 지식 습득 보유여부</li> </ul>

	구분	전체 거래비율	개별 거래비율
약정배분	상위 6사	6개사 총합이 전체거래의 50% 이상	Max : 25%, Min : 6%
	중위 9사	9개사 총합이 전체거래의 40% 이상	Max : 10%
	기타 사	기타사의 총합이 전체거래의 20% 이상	Max : 10%

## (2) 거래선물사 선정기준

	구분	항목별점수	최종 점수
채점방식	1단계 2사	8 점	담당자 개별 채점 ⇒ 담당영역별 가중평균 ⇒ 최종점수 합산
	2단계 3사	6 점	
	3단계 4사	4 점	
	기타 사	1 점	

담당자	항목	평가요소
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(90%)	자료제공 능력 및 분석방법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권/선물시장관련 분석자료 제공 여부</li> <li>- 구조채권 및 해외채권 등 특수채권과 선물의 관계분석 및 자료제공</li> <li>- 의사결정방식(Top-down/Bottom-up approach) 사용여부</li> <li>- 수학적, 통계적 혹은 다른 분석 기법 사용 및 활용 정도</li> </ul>
	공급정보 제공능력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/선물 차익거래 및 각종 거래관련 기법 제공여부</li> <li>- 금융공학 기법 및 차별화된 기술적 분석기법 제공여부</li> <li>-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 기법 제공 여부</li> </ul>
	기타(2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자료 및 서비스 제공</li> <li>- 문의시 대응능력</li> </ul>
	세미나(1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리선물시장 분석 및 전망</li> </ul>
	채권 트레이 더 (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격 입력 및 체결의 정확성 및 신속성</li> </ul>
신탁회계팀 (5%)	신탁결제 업무능력 (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제 업무 상의 정확성 및 신속성</li> <li>-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</li> <li>- 결제 전반에 필요한 지식 습득 보유여부</li> </ul>

	구분	전체 거래비율	개별 거래비율
약정배분	상위 4사	4개사 총합이 전체거래의 80% 이상	Max : 40%
	기타 사	기타사의 총합이 전체거래의 20% 이상	Max : 20%

- 평가자 개인별 비중 : 평가자의 직책, 운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을 둘 수 있으며,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
### 3. 적용 예외

- (1) 일임 계약의 수익자가 거래 중개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경우
- (2) 매매 상대방이 제한되어 원활한 거래가 어려운 경우 (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주간사가 정해진 블록딜)에는 예외를 적용하되, 매매거래 전 운용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(3) 거래 중개회사로 선정된 이후라도 매매 사고 및 중개회사의 신용도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 QPS팀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

제정 2013.10.24

개정 2015. 8.10

### 1. 중개회사 및 리서치서비스 평가기준

#### (1) 평가항목 및 비중

평가항목	내 용	비중
리서치서비스	투자 아이디어, 조사분석 서비스, 세미나 제공 등	60.0%
매매수수료	매매수수료의 유불리	30.0%
트레이딩	주문집행의 정확성 및 속도	5.0%
오퍼레이션	체결 및 결제업무의 적확성	5.0%
합계		100.0%

#### (2) 평가 방법:

- ① 평가항목별로 매니저와 오퍼레이션팀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.
- ② 상기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배점차이가 실질적으로 비중의 효과를 갖도록 배점차이를 적용하여야 한다.
- ③ QPS팀은 상기 평가점수의 총 합계가 50점 이상인 거래처에 대하여 기존 중개거래를 유지하거나 신규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.

### 2. 수수료 배분기준

- (1) 각 중개회사에 배부되는 수수료 중 조사분석서비스에 관한 계약의 의하거나 리서치서비스를 이용하여 펀드를 운용, 평가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수수료와 조사분석수수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매매체결수수료는 최저가중개회사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고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조사분석서비스수수료로 본다.
- (2) 거래대상 중개회사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1그룹과 2그룹으로 구분하여 제1그룹에는 60%이상, 제2그룹에는 40%이내의 약정을 배분한다.
- (3) 이조 3항에도 불구하고, 매매빈도, 거래처의 희소성, 거래계좌이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매분기초 기준으로 ETF 및 주식 등의 거래대상 금액이 300억원 이하, 선물 등의 거래대상 금액이 150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각 중개회사에 대한 별도의 약정 배분 기준을 두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거래대상 금액의 산정에는 일임 계약의 수익자가 거래 중개회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금액은 제외한다.

### 3. 적용 예외

- (1) 일임 계약의 수익자가 거래 중개회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경우

- (2) 매매 상대방이 제한되어 원활한 거래가 어려운 경우 (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주간사가 정해진 블록딜)에는 예외를 적용하되, 매매거래 전 운용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(3) 거래 중개회사로 선정된 이후라도 매매 사고 및 중개회사의 신용도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.